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5. 10. 27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10. 27
 라. 상정일자 : 1995. 11. 6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각종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된 것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요율을 신설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임.

나. 주요골자

- 제3조 별표1중 구분란 [증명]의 제2호 병직에 관한 증명 “향토 예비군 편성확인원”, 제3호 중(2) “신원”을 삭제하고 (4)“국제결혼신고”를 “국제결혼증명”으로 하며 제4호 “직업에 관한 증명”과 제9호의(7)을 삭제함.
- 동조 별표1중 구분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의 제3호(3)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제5호(12) “채비지 소유자 확인원”, 제7호 “관광운수관계”를 삭제하고 제6호의 (1) 내지 (5)와 (8)은 관계법규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삭제 또는 변경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수수료징수요율을 신설하는 사항은 어느 것입니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의 제6호(1) “의료기관개설”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근거가 있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
의 결	95. 11. 10
년 월 일	(제42회)

제출년월일 : 1995. 10. 2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각종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된 것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사항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개별법령에 수수료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규정부분 삭제
- 각종법규 개정에 따른 수수료면제부분 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수수료징수요율 신설

3. 관련법규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4조의 2
-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 국제결혼 증명에 관한 지시 {경기지방 13230-559(95. 3. 21)}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3조
- 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 19조
- 의료법 제30조, 제31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 의료기사업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 공중위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16호의2서식)
-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7조, 제135조
- 관보 제12951호(95. 2. 28일자)-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중 구분란 **[증명]**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중(2) “신원”을 삭제하며 (4)“국제결혼신고”를 “국제결혼증명”으로 하고 (3)내지 (5)를 (2) 내지 (4)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

제9호의 (7)을 삭제하고 (8)내지 (10)을 (7)내지 (9)로 한다.

동조 별표1중 구분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의 제3호 (3)을 삭제하고, 제5호 (12)를 삭제하여 (13)내지 (15)를 (12) 내지 (4)로 한다.

제6호 (1)을 별지와 같이하고 (2)내지 (5) 및 (8)을 삭제하며 (6)내지 (7)을 (2) 내지 (3)으로 한다.

동란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구 분	기 준	요 액
(1) 의료기관 개설		
(가)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50,000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30,000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신고	1건	2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	1건	20,000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
(바)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
(사)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건	2,000
(아) 치과기공소 양수신고	1건	2,000
(자)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증명등수수료율표		(별표 1)		체증명등수수료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비고	
증명					증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력에 관한 증명)					(삭 제)				
(1)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원		1통	300원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삭 제)				
(2) 신 원		1통	200원		(2) (현행(3)과 같음)				
(3) (생 략)					(3) 국제결혼증명				
(4) 국제결혼신고		1통	3,000원		(4) (현행 (5)과 같음)				
(5) (생 략)					(삭 제)				
4. 직업에 관한증명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1) 재직·퇴직·경력 5~8(생 략)		1등	300원		5~8(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6)(생 략)					(1)~(6)(현행과 같음)				
(7)환지에정지 변경신청		1필지	350원		(삭 제)				
(8)~(10)(생 략)					(7)~(9)[현행 (8)~(10)과 같음]				
10~14(생 략)					10~14(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등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등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3) 규모이하체분업신고		1건	1,150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11)(생 략)					(1)~(11)(현행과 같음)						
(12)채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50원		(삭 제)						
(13)~(15)(생 략)					(12)~(14)[현행 (13)~(15) 와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1건	1,000원		(1) 의료기관 개설						
					(가)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50,000원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30,000원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건	20,000원			
					조산원의 개설신고						

신·구조물 대비표

현			개			안		
구	문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	1건	20,000원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바)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사)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건	2,000원
						(아) 치과기공소 양수신고	1건	2,000원
						(자)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2)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교부	1건	550원			(삭 제)		
	(3)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 교부	1건	550원			(삭 제)		
	(4) 숙박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삭 제)		

신·구조물 대비표

현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5)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		1건	550원		(삭 제)								
부					(2)~(3)[현행(6)~(7)과 같음]								
(6)~(7)(생 략)					(삭 제)								
(8) 유기자 영업허가증 재교		1건	550원		(삭 제)								
부					(삭 제)								
7. 관광운수관계													
(1) 이륜소형자동차임시운행		1건	1,000원										
허가신청													
(2) 이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		1건	1,000원										
및이전신고													
(3) 운전면허 기재사항 변경		1건	500원										
신고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